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부정행위·제재처분 해설

2021. 3. 10.

연구윤리지원센터
조사범무팀





제척기간 신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연구기관 역할 확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연구윤리와 제재처분은 어떻게 변했을까?



연구윤리, 부정행위 분리



CONTENTS

01	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	
	주요 변경사항	1
	관련 Q&A	3
02	제재처분	
	주요 변경사항(절차 중심)	4
	주요 변경사항(처분사유 중심)	7
	관련 Q&A	11

※ 본 자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안)” (과기정통부, 2021.1.)을 재구성 한 것으로, 향후 유권해석 변경 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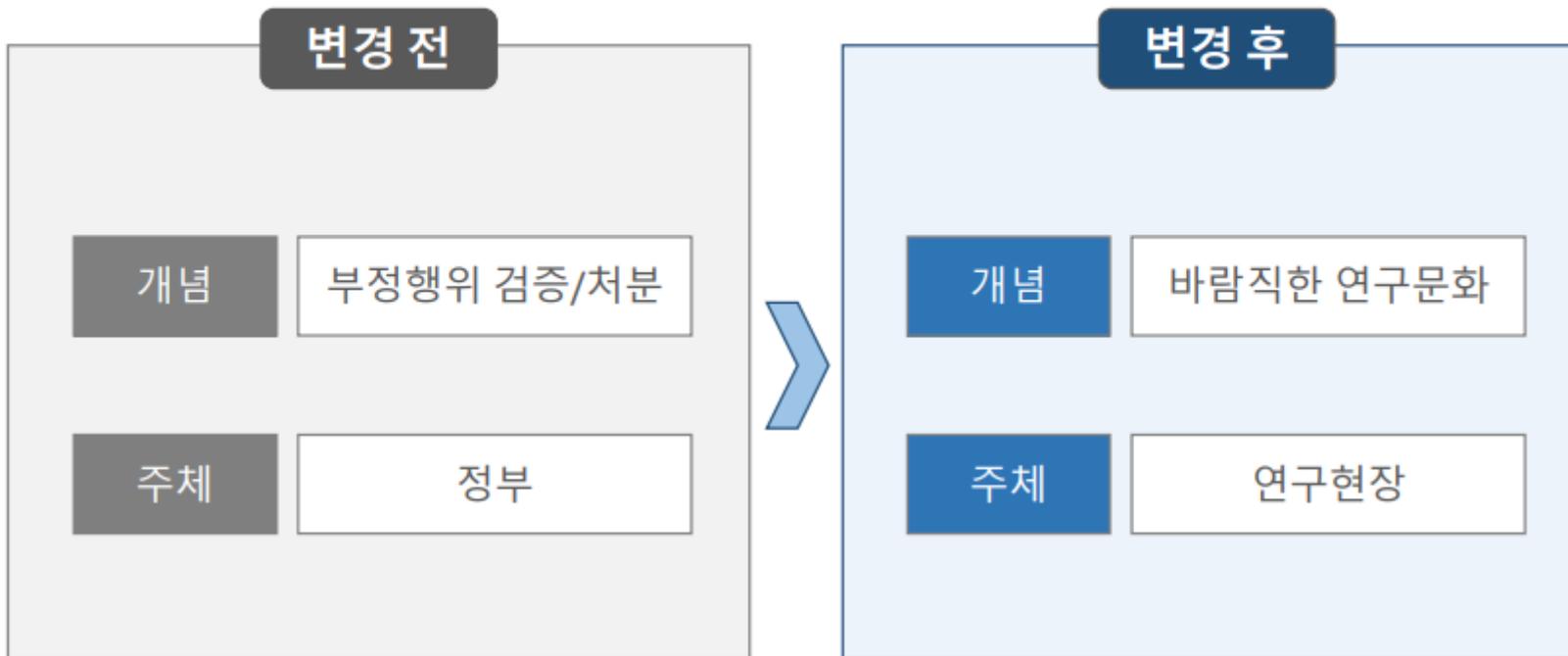
연구윤리(연구부정행위)



연구현장 스스로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연구현장 주도의 바람직한 연구문화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안)” (과기정통부, 2021.1.)

01 연구윤리 개념 확장

- 종전 : 연구윤리 확보 = 연구부정 방지
- 변경 : 연구윤리 확보 = 연구진실성 확보 +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이해 충돌 관리 + 인간동물연구 윤리 +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

02 연구기관 역할 확대

- 자체규정 마련: 연구기관별 **연구윤리 및 부정행위 검증 규정** 마련
- 연구기관 검증범위: 연구부정행위에서 **일반부정행위까지 확대**
→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의 경우 부처와 전문기관의 직권 조사 가능

03 부정행위를 연구부정행위와 일반부정행위*로 구분

* 편의상 연구부정행위 이외의 부정행위를 일반부정행위로 통칭 (일반부정행위에 대한 용어는 현행 시행규칙에 미반영)

- 부정행위: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법 제31조)

구분	연구부정행위 (법 제31조제1호)	일반부정행위 (법 제31조 제2호~제6호)							
내용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	연구비 사용용도, 사용기준 위반 (제2호)	성과 소유위반 (제3호)	보안위반 (제4호)	거짓부정 신청수행 (제5호)	그밖에시행령으로 정한 건전성저해행위(제6호) (시행령 제56조제1항)			
						조사방해 행위 (제1호)	연구비 사용 건전성 저해행위 (제2호)	생명윤리 위반 (제3호)	연구실 안전위반 (제4호)

01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윤리 관련하여 **연구기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연구기관은 연구윤리 및 부정행위 검증조치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자체규정은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연구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준수를 관리하여야 하고, 소속연구자와 지원인력 등에 대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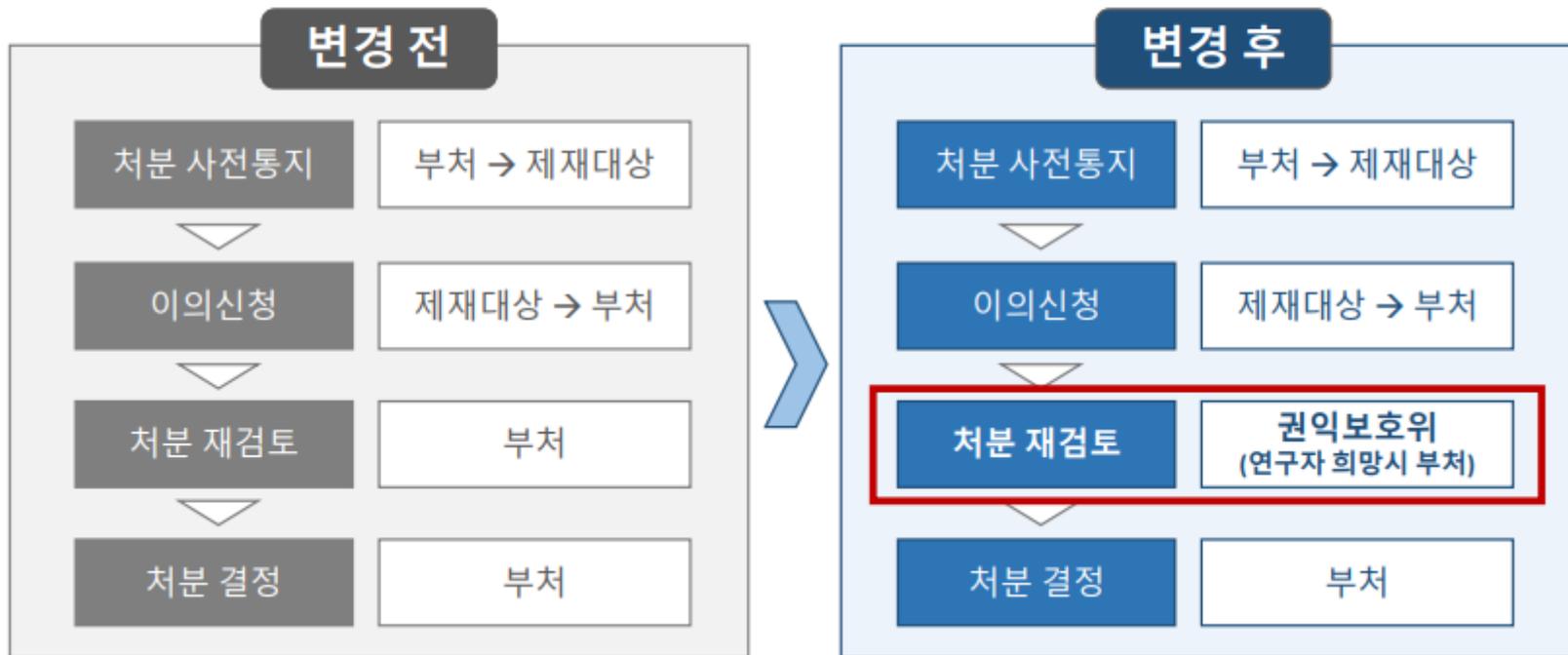
02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윤리 관련하여 **연구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연구자는 연구윤리 준수 의무가 법에 명시됨에 따라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야만 함
- 아울러, 당연히 연구자가 소속한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자체규정도 준수해야 함



제재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신설됩니다!

“ 억울/과도하게 제재를 받는 사람/기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안)” (과기정통부, 2021.1.)

01 근거 법령 단일화

-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 시행령(공동관리규정), 학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 등
→ [변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 시행령
- ※ 다만 혁신법 시행(21.1.1.) 이전 행위는 기존 법령(구법)에 따름

02 용어변경

- [기존] 제재조치 → [변경] 제재처분
- [기존] 이의신청 → [변경] 재검토 요청

03 혁신법 신설사항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범부처 재검토 기구)
- 재검토 요청~최종처분까지 30일 처리기한 ※ (과기정통부 해설) 훈시규정
- 처분시효(제척기간) 10년

02. 제재처분 – 주요 변경사항(절차 중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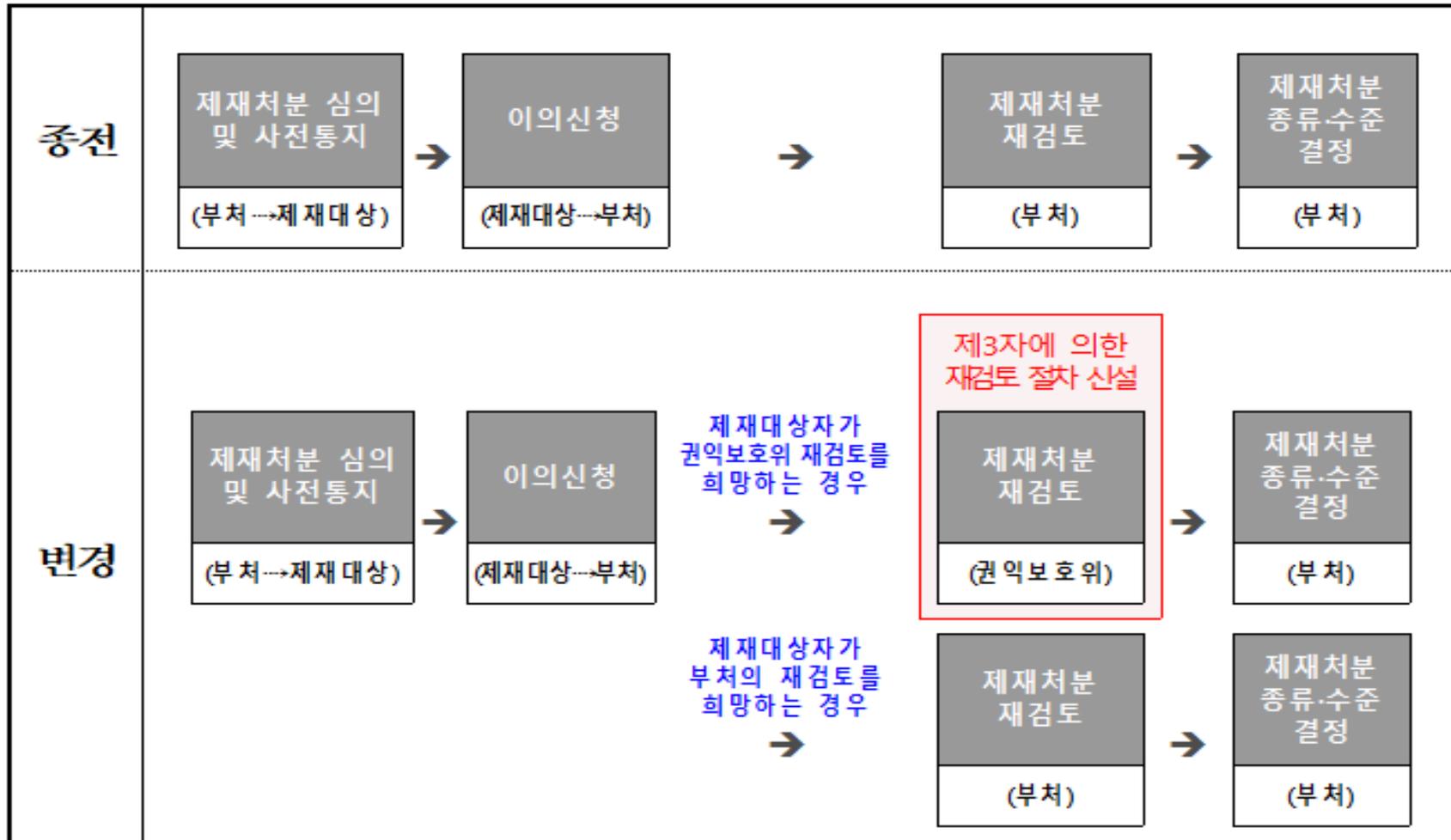
04 재검토 주체 이원화

- [기존] 사전처분 및 재검토(구 이의신청) 모두 재단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직접 심의
→ [변경] 재검토 주체를 ①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또는 ②소관부처 중 직접 선택

05 주요 변경사항 정리

	기존	변경	
용어변경	제재조치	제재처분	
	이의신청	재검토 요청	
재검토 주체	제재조치평가단	제재대상자 직접 선택	①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②소관부처
재검토 신청기한	30일	사전 처분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처분기한	제한없음	재검토 의견 접수 후 30일 ※ (과기정통부 해설) 훈시규정	

06 제재처분 절차 순서도



출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안)” (과기정통부, 2021.1.)

01 제재처분 사유 개선

- [기존] 연구결과 불량
→ [변경]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모두 불량
- [기존] 연구비 사용용도 위반
→ [변경]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모두 위반

02 제재처분 종류 변경

- [기존]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 [변경]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사업비 환수 제외, 사업비 환수와 제재부가금 역할 교체
 - 제재부가금(구 사업비 환수): [기존] 연구비 사용용도 위반 → [변경] 모든 제재사유
 - 사업비 환수(구 제재부가금): [기존] 모든 제재사유 → [변경]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 ※ 사업비 환수는 혁신법 제재처분은 아니지만 일반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을 지님

03 제재처분 상한, 합산, 가중·감경 기준 정비

- 상한: 1회 처분 기준, 참여제한 10년, 제재부가금 500%
- 합산: 상한 범위 내, 둘 이상의 과제에서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정 합산 가능
- 가중: 1/2 범위 내 가중 가능
 - (예시) 학생인건비 관련, 5년 내 동일사유 재적발, 동일 과제에서 둘 이상 제재사유 발생 등
- 감경: 1/2 범위 내 감경 가능
 - (예시) 연구기관의 부정행위 검증 등 후속조치 이행, 조사과정 성실 협조 여부 등

04 제재처분 선택 · 병과, 사후관리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선택 또는 병과 가능
- 부처별 참여제한 독립 처분 가능(개별 기산)
- 참여제한 5년 이상, 제재부가금 300% 이상인 제재처분 대국민 공개(NTIS, IRIS)
-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모든 국가연구개발 활동* 불가

* 국가연구개발활동: 연구개발 기획, 수행, 관련 위원회 참여 등 (법 제2조제8호)

02. 제재처분 – 주요 변경사항(처분사유 중심) –

05 제재처분 기준 요약표

제재처분 사유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기관	개인
연구부정행위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3년	150%	30%
연구비 사용용도 및 기준위반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6개월~10년	위반금액 100%~250% + 환수 100%	위반금액 100%~200%
연구과정 및 성과 불량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2년	100%	20%
협약 위반에 따라 과제 변경 또는 중단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2년	100%	20%
연구성과 소유 위반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3년	150%	30%
보안 위반 (법 제31조 제1항 제4호)	2년~5년	100%~250%	20%~50%
거짓부정으로 신청 또는 수행 (법 제31조 제1항 제5호)	2년	100%	20%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한 건전성 저해 행위 (법 제31조 제1항 제6호)	2년	100%	20%
연구개발 수행 포기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2년	100%	20%
회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법 제32조 제1항 제5호 ~ 제6호)	납부할 때까지	-	-

01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기준은?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혁신법이 적용되며,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는 기존법이 적용됨
- 다만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사항은 법 시행일 이후 사전통지하는 처분부터 적용됨

02 복수의 과제에서 동일한 제재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재처분을 합산하는지?

- 복수의 과제에서 동일한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동일한 사유이지만 각 과제에서 개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처분내용을 합산해야 함(과제 기준)

03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진 것인지?

-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 모두 불량한 경우에만 제재사유에 해당하므로 성실실패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동일 효과 발생

04 참여제한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 수행 중인 과제에도 참여할 수 없는지?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이후 모든 국가연구 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가 제한됨



Q & 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감사합니다.



연구윤리지원센터
조사범무팀

